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1. 12.

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: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3. 안건요지 : 따 로 붙 임

4. 검토의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1월 일

산업건설위원회

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7년 1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우수기업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 및 연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지원하는 시설보조금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.
- 나.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특별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를 정함(안 제6조).
- 다. 지원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(안 제7조).
- 라.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함(안 제14조).

3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투자기업에 도움이 되는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 우수기업 투자유치에 필요한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보면

-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는 입지지원 대상에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함
- 안 제5조에서는 우수기업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 및 연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지원하는 시설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6조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특별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를 정함.
-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「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」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과 동일 용도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함.
- 안 제9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협의회 관련내용을 통합 정비함.
- 안 제10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 위촉 및 관련 투자 유치활동 경비 지급규정을 정비함.
- 안 제14조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함.

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및 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우리시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,
-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유치기능 대폭 이관으로 각급 지방자치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외국의 우수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
- 우리시도 최근「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」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해야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전략과 현실적이고 경쟁력있는 지원제도의 마련이 시급해 집에 따라
-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투자 인센티브 지원규정을 마련 하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인프라와 풍부한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우수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